

## 부속서 6-나

###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6.6조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3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제1901.90호나 제2106.90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페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제1901.90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페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며 다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제1901.10호로 분류된 유아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페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1901.20호로 분류된 혼합물 및 가루반죽으로서 소매용이 아니며 버터지를 중량으로 25페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1901.90호 또는 제2106.90호로 분류된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페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2105호로 분류된 상품, 제2202.90호로 분류된 우유를 포함한 음료, 또는 제2309.90호로 분류된 동물사료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페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 라. 제0703.10호, 제0703.20호, 제0709.59호, 제0709.60호, 제0710.21호 내지 제0710.80호, 제0711.90호, 제0712.20호, 제0712.39호 내지 제0713.10호, 또는 제0714.2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 마. 제1006호, 제1102호, 제1103호, 제1104호, 제1901.20호, 또는 제1901.9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1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쌀 제품, 또는 제1006호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 바.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 또는 제2106.90호 또는 제2202.90호로 분류된 농축 또는 비농축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된 단일의 과일이나 야채의 과일 쥬스 또는 야채 쥬스에 사용되며 제0805호 또는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 사. 제2008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류 또는 제20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복숭아·배 또는 살구

- 아. 제1501호 내지 제1508호, 제1512호, 제1514호 또는 제1515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 자. 제1701호 내지 제1703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701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 차. 제1806.1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 카. 가호 내지 차호와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